##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건 호 2038

제출연월일: 2022. 12. 2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물가, 인건비,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안전점검수수료 변경(안 별표 4)

나.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1조, 제17조, 제22조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

나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8조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2555호, 2022. 11. 10.)

라. 입법예고: 2022. 10. 17. ~ 11. 7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"을 "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지원"을 "예산의 범위에서 지원"으로 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"을 "안전점검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은"을 "구청장은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해야 한다"를 "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 할수 있다"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(제26조제1항제2호 관련)

광고물등	적용기준	수수료
가. 벽면 이용 간판	- 면적 5m² 이하 - 면적 5m² 초과 20m² 이하 - 면적 2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	18,000원 26,000원 1,000원
나. 돌출간판	- 연면적 3.5m² 이하 - 연면적 3.5m² 초과 10m² 이하 - 연면적 10m² 초과시 1m²당 더하는 금액	<u>18,000원</u> <u>26,000원</u> <u>2,000원</u>
다. 옥상간판	- 연면적 50m² 이하 - 연면적 50m² 초과 70m² 이하 - 연면적 7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	<u>27,000원</u> <u>49,000원</u> <u>1,600원</u>
라. 지주 이용 간판·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·교통시설 이용 광고물	- 연면적 10m² 이하 - 연면적 10m² 초과 20m² 이하 - 연면적 2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	<u>18,000원</u> <u>26,000원</u> <u>1,000원</u>
마. 애드벌룬 -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- 지면에 설치하는 것	-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-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	
바. 공연간판 - 벽면에 설치하는 것 - 지면에 설치하는 것	-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-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	
사. 현수막 게시시설	- 면적 30㎡ 이상 40㎡ 이하 - 면적 40㎡ 초과시 1㎡당 더 하는 금액	<u>14,000원</u> <u>800원</u>
아. 그 밖의 광고물 등	-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	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)	제11조(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)
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	①
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	
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<u>예산</u>	<u>비용의 전부 또는 일</u>
<u>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지원할 수 있	<u>부를 예산의 범위에서</u>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	③
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	
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	
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	
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	
장 등의 설치・운영에 소요되는	
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지원</u>	<u>예산</u>
할 수 있다.	의 범위에서 지원
제17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	제17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
수 있는 자의 기준 등) <u>제17조에</u>	수 있는 자의 기준 등) <u>안전점검</u> -
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	
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	
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이	
경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	
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	<b>–</b> 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	제22조(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

청구 등)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 라 구청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 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 판 · 현수막 · 벽보 · 전단 등에 대 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 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 에 징수해야 한다.

청구 등) ① <u>구청장은 법 제10조2제1</u>
항에 따라
②
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
에게 징수 할 수 있다.

## 근거법규

### □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- 제9조(광고물등의 안전점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 이경우 안전점검의 기준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6.>
  -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 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.
-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①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·제한 등에 관한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

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관리자등"이라 한다)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- 1.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- 2.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
- 3. 광고주
- 4. 옥외광고사업자
- 5.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를 승낙한 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-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「전기통 신사업법」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.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

- 42 (제251회-복지건설위제8차부록)
  -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1. 6.>
  -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  - ⑥ 시장등은 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 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⑦ 시·도지사는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)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6.>
  - 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. <신설 2016. 1. 6.>
  -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<신설 2016. 1. 6.> [전문개정 2011. 3. 29.][제목개정 2016. 1. 6.]
- □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38조(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)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·군·구 조 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  - 2.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  - 3. 건축·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
 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  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, 검사요령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#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

#### 제3조(작성대상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
- 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

### 3. 작성자

○ 소 속: 건축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이 름: 김은경

○ 연락처: (052)290-4023